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건강관리과-12030 |
| 결재일자 | 2015.6.25. 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      |

| ★주무관 | 가족보건담당 | 건강관리과장 | 보건소장 | 부구청장         |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|
| 주은지  | 代주은지   | 이응철    | 황원숙  | 06/25<br>김병환 |  |
| 협 조  | 기획예산과장 |        | 이용식  |              |  |
|      | 규제개혁담당 |        | 김용환  |              |  |
|      | 주무관    |        | 김하연  |              |  |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 계획**

**2015. 6.**

**성북구보건소  
건강관리과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

「치매관리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,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에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 I 관련 법령

-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(치매상담센터의 설치)
- 「치매관리법」 제18조(비용의 지원)
-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

## II 개정 이유

- 「치매관리법」이 2011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
- 관련 상위법 변경 : 노인복지법 제29조 ⇒ 치매관리법 제17조

## III 주요개정내용

- 「치매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시행에 따른 성북구 치매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 설치·운영의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)
-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 재정비(안제3조)
- 센터의 위탁운영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규정 신설(안 제4조제4항)
-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용어 등 조문 재정비(안 제5조)
- 그 밖에 용어 변경(협약→위탁, 수탁자→수탁기관 등) 및 띄어쓰기 정비

## IV

### 향후추진일정

- 입법예고 : 2015. 7. 2. ~ 7. 22.
-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 : 2015. 8. 12.
- 구의회 상정 : 2015. 8. 31. (제236회 임시회)

붙임 1. 제안이유서 1부

2.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
3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4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
5. 관련법령 1부. 끝.